

예 산 총 칙

2008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63,776,841	7,913,305
일반회계		243,089,582	7,292,687
특별회계		20,687,259	620,618
	기타특별회계	20,687,259	620,61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22,110	21,663
	주택사업특별회계	347,178	10,415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756,600	22,69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63,062	13,89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045,904	31,377
	주차장특별회계	234,213	7,026
	수질개선특별회계	15,706,942	471,20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744,968	22,349
	기반시설특별회계	666,282	19,98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93,631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